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68
----------	-------

발의연월일 : 2026. 10. 12.

발 의 자 : 소병훈 · 박 정 · 송옥주
조계원 · 박지원 · 부승찬
박용갑 · 권철승 · 장종태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도 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재원이 크레딧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 지원됨에 따라, 가입자가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임신 · 출산 ·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경력단절을 고려할 때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를 “모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자녀 수”를 “자녀의 출생순위”로 한다.

1. 얻은 자녀가 첫째인 경우: 12개월
2. 얻은 자녀가 둘째인 경우: 15개월
3. 얻은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18개월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

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 각 호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u>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u>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u> <u>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u> 2. <u>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u> <u>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u>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분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u>----- ----- -----. 1. <u>얻은 자녀가 첫째인 경우: 12개월</u> 2. <u>얻은 자녀가 둘째인 경우: 15개월</u> 3. <u>얻은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18개월</u> ② ----- ----- -----<u>모</u> <u>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분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u>

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
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신설>

입할 수 있다.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
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
49조 각 호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
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
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
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
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
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
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
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

⑤ -----자녀의 출생

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순위</u> ----- -----.
------------------------------------	---------------------------